##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65

발의연월일: 2024. 8. 5.

발 의 자:이춘석·안호영·윤종군

윤준병 · 김윤덕 · 이기헌

조 국・정준호・안태준

이원택 · 위성곤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장 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기, 신호등, 안전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한편,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선유도표지,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서로 연계되어 설치·관리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어 해당 부속물과시설이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여 예산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임.

이에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에 관하여 정하는 경

우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의 부속물이 서로 연계되어 조화롭게 설치· 관리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 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의 부속물 이 적재적소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도로의 안전을 제고하려 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과 연계하여 조화롭게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법」 제23조의 구분에 따 른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	설치・관리기준 등) ①
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	
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u>&lt;후단 신설&gt;</u>	이 경우 「도로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과 연
	계하여 조화롭게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법」 제23조
	의 구분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